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7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오세희 · 박희승 · 맹성규
채현일 · 위성곤 · 박수현
박균택 · 서영교 · 전진숙
안태준 · 한정애 · 허성무
이주희 · 최혁진 · 이춘석
정일영 · 이용우 · 김원이
허영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는 지난 60여 년간 공장심사 중심의 운영 방식이 유지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 및 설계·개발 중심의 첨단 산업 구조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기심사의 획일적 운영, 반복적인 시험·검사와 중복적인 자료 제출로 인해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허위 KS 인증 표시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 확산으로 불법 제품·서비스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보다 실효적인 확인·조사 및 협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KS 인증 제도의 운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인증심사 유형과 인증취득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심사 과정에서 중복적인 시험·검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심사의 일부 면제 또는 주기 연장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 사고와 같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의 KC 안전기준 간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안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 신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KS 인증을 취득·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험·심사 비용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 비용 지원, 컨설팅 제공, 시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표준화 참여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이를 통해 KS 인증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과 혁신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고위험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 확보와 산업 표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합화”를 “부합화 및 상충 방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를 “제조하거나 개발·설계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 제품”을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인증을 신청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을 신청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인증심사의 방법”을 “인증심사의 유형·방법”으로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험·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중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심사의 일부 항목을 면제하거나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하

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공장, 사업장, 사무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등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불법 제품·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인증받은자”로 한다.

5의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단체표준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여

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 관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의2에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등을 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등(이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업등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업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호 중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 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준을 신속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⑥ (생 략)</u> <u><신 설></u>	<u>⑦ (현행 제6항과 같음)</u> <u>제5조의2(고위험 광공업품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 산업통 상부장관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 험 광공업품에 대하여 산업표 준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5조의2(출연금) (생 략)</u>	<u>제5조의3(출연금) (현행 제5조의2 와 같음)</u>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생 략)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부합화 및 상충 방지-----

-----.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

-----제조하거나 개발
-----· 설계하는 자는-----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증심사) ① -----

-----인증심사의 유형에 따라 그 제
-----품-----

② (생략)

③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인
증을 신청한 자-----

-----.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의 시험·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인증을
신청한 자-----
-. -----

-----.

⑥ 인증심사의 유형·방법----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
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인증심사원) ① 산업통상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17조
에 따른 인증심사, 제19조제1항
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
에 따른 이전심사,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
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심사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 3. (생략)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

-----.

제18조(인증심사원) ① -----

-----제20조제1
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
사,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
조사-----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시판품조사·현

<u>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u> 업무를 수행한 때 4.·5. (생략) ④ (생략)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 ⑥ (생략)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② (생략) <u><신설></u>	<u>장조사,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u>----- - 4.·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정기심사 등) ① ----- ----- ----- ----- ----- -. <u>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심사의 일부 항목을 면제하거나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3항·제4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u>
---	---

③ (생략)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장, 사업장, 사무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시설 등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

⑥ -----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

<신 설>

-----.
제21조의2(자료제출 등 협조 요

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같은 법 제32조의5
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
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
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되는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
라인 유통·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u>불법 제품·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삭제, 접속경로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u> <u>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의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하거나 제공한 때</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③ ----- -----인 증받은자-----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④ (생략)

<신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증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의 실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시험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이 경우 단체표준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제표준의 수립 관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한국산업표준 및 국제표준 간 부

<신 설>

합화에 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의5(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등을 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등(이하 “우수기업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업등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업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④ 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u>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 ----- -----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u>시판품 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u>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1. ----- <u>시판품 조사·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 ----- -----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u>시판품 조사·현장조사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조사</u> 를 거부·	1. ----- <u>시판품 조사·현장조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u>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 4. (생 략) ② (생 략)	<u>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u>-----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